

20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학금 자체 선발기준(성결대학교)

1.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기준

가. 선발기준(공통)

1)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기준

가)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상 *기본요건을 갖춘 자

나) 본 대학교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이며,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자

* 휴학생의 경우 근로시작일부터 “재학생” 상태가 아닐 경우 선발 취소 처리

* 이연등록자의 경우 해당학기 복학자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

* 기타사항: 초과학기자의 경우 적용 가능

다) 교내근로 선발기준 혹은 교외근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

라) 선발 제외 기준

- 직전 최종학기 근로장학생 자격해제 해당자는 위 사항과 관련 없이 선발 제외
- 학자금지원구간 심사 및 신·편입생, 복학, 초과학기 등으로 학사 · 수납원장 업로드가 지연되어 심사가 지연되는 학생은 반영시점 전까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의사 없음”에 해당하는 자

나. 교내근로 선발기준

1) 선발순위 및 배점방식에 따라 선발 순위, 배점자 상위자 순으로 선발

가) 선발순위: 아래 상세기준에 따라 순위 분류

순위	상세기준
1순위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자 중 *배점방식 상위자 - 단, 근로지 선발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 “의사 없음”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2순위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9구간 이하인 자 중 *배점방식 상위자 - 단, 근로지 선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 “의사 없음”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나) 배점방식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별 환산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환산		직전학기 근로여부 환산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구간(기초, 차상위)	45	100 ~ 95	45	직전학기 근로안함	10
1구간	40	94 ~ 90	40	직전학기 근로함	0
2구간	35	89 ~ 85	35		
3구간	30	84 ~ 80	30		
4구간	25	79 ~ 75	25		
5구간	15	74 ~ 70	20		
6구간	15	신 · 편입생, 재입학생	45		
7구간	10				
8구간	10				
9구간	10				

다) 동순위자간 처리기준: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권장사유자,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자, 직전학기 백분위 상위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유자(업무처리기준):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자녀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

※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 및 증빙서류는 2026학년도 국가근로 업무처리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타처리기준

가) 신속한 선발을 위해 학생 본인에게 근로의사(대면, 비대면 포함)를 확인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의사 없음”으로 간주한다.

다) 최종 대상자 전원 선발 후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가 미달될 경우, 대학 담당자는 교내근로지 선발대상자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단, 교내근로지 장학생이 80% 이상이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내라면 조정하지 아니한다.

라) 대체장학생 선발(교내근로): 교내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장학생 선발을 아니한다. 단, 대학담당자가 대체 선발 사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내근로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며 근로지별 최대 1회, 해당학기 방학시작일 이전까지 선발이 가능하다.

다. 교외근로(일반 교외근로) 선발기준

1) 선발순위 및 배점방식에 따라 선발 순위, 배점자 상위자 순으로 선발

가) 선발순위: 아래 상세기준에 따라 순위 분류

순위	상세기준
1순위	- 근로기관(근로지) 주소지 기준 근거리 거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자 중 *배점방식 상위자 - 단, 근로지 선발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 “의사 없음”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2순위	- 근로기관(근로지) 주소지 기준 근거리 거주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9구간 이하인 자 중 *배점방식 상위자 - 단, 근로지 선발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 “의사 없음”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순위자 선발

나) 배점방식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별 환산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환산		직전학기 근로여부 환산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구간(기초, 차상위)	45	100 ~ 95	45	직전학기 근로안함	10
1구간	40	94 ~ 90	40	직전학기 근로함	0
2구간	35	89 ~ 85	35		
3구간	30	84 ~ 80	30		
4구간	25	79 ~ 75	25		
5구간	15	74 ~ 70	20		
6구간	15	신 · 편입생, 재입학생	45		
7구간	10				
8구간	10				
9구간	10				

다) 근로지 선발 요구조건: 근로기관(근로지)별 자체 수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순위자간 처리기준 사용

다) 동순위자간 처리기준: *업무처리기준의 우선선발 권장사유자, 당해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낮은자, 직전학기 백분위 상위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유자(업무처리기준):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자녀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

※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 및 증빙서류는 2026학년도 국가근로 업무처리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기타처리기준

가) 신속한 선발을 위해 학생 본인에게 근로의사(대면, 비대면 포함)를 확인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의사 없음”으로 간주한다.

나) 대체장학생 선발(교외근로)의 경우 교외근로 선발기준을 적용 및 선발하며 학기 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선발 가능하다.

2. 국가근로 사업 운영 및 관리

가. 근로장학생 관리

- 1) 사전교육: 학기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 2) 간담회 및 개별상담: 학기별(대면, 비대면 포함) 1회 이상

나. 근로기관 관리

- 1) 근로기관(근로지) 점검: 연간 1회 이상
 - 가) 교외 근로기관 점검(비대면 포함): 연간 1회 이상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리 여부 점검
 - 근무환경 및 근로장학생 안전 점검
 - 나) 교내 근로지 점검(비대면 포함): 연간 1회 이상
 -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리 여부 점검
 - 근무환경 및 근로장학생 안전 점검

다. 부정근로 관리: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라. 근로장학생 자격해제: 국가근로 장학생 서약서 위반 및 대학에서 요구한 출근부 제출이 학기 3회 이상 지연될 경우 자격해제 처리

마. 근로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 1) 지급일정: 근로월 기준 다음달 25일 이전까지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 2) 신청방법: 근로월 기준 다음달 1,2일(영업일 기준)에 신청한 대학이 요구한 방법으로 신청한다.
방법은 대학 사전교육을 통해 안내한다.
- 3) 예외사항: 2027년 2월 근로장학금은 대학회계 결산으로 장학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여 근로장학생에게 통보하며, 예정된 지급일정보다 늦지 아니한다.